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 사업관리 지침

제정 2022. 12. 02.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등에 따라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지침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은 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따른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문기관”이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하 “장관”)이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22조·동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2. “연구개발기관”이란 혁신법 제2조 3호와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기관·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3. “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4. “공동연구개발기관”이란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5. “위탁연구개발기관”이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6. “협약”이란 전문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간의 계약행위를 말한다.
7. “연구개발계획서”란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계획사항을 지정서식에 의하여 작성한 것을 말한다.
8. “연구개발비”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를 뜻하며,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와 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 정한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포함한다.

9. “정부지원연구개발비”란 혁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말한다.
10. “기관부담연구개발비”란 혁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말한다.
11. “비목”이란 사업비 중 직접비 및 간접비를 말한다.
12. “항목”은 비목의 세부 항목으로서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 연구개발비, 연구개발 부담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보안수당을 직접비로 구성하고 및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 지원비는 간접비로 구성한다.
13. “집행잔액”이란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 따라 편성한 연구개발계획서 예산(예산변경이 반영된 최종 예산을 말함)에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말한다.
14. “정산”이란 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및 세부 증명자료에 대하여 실시하는 일체의 검토 행위를 말한다.
15. “불인정금액”이란 정산 과정에서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집행액으로 인정하지 않는 금액을 말한다.
16. “정산잔액”이란 연구개발비의 집행잔액 및 불인정금액의 합을 말한다.
17.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혁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8. “정부납부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기술실시계약 및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으로서 전문기관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19. “통합정보시스템”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연구개발정보의 처리, 연구개발비를 사용·관리를 위하여 구축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20.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접수·평가·수행관리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서 구축한 전산시스템(<https://ctrd.kocca.or.kr/>)을 말한다.

21. “연구개발과제”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22. “신규과제”란 신규 지원 대상으로 협약된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23. “계속과제”란 총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제 중 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24. “종료과제”란 총 수행기간이 종료된 과제를 말한다.
25. “문제과제”란 중단 및 실패과제, 협약 및 규정 위반 등의 사유에 해당되거나 의심되는 과제를 말한다.
26. “책임평가위원 제도”란 평가의 연속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성실하게 평가에 참여하고 전문성이 뛰어난 선정평가위원을 단계·최종·특별 평가에 참여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규정이나 지침을 별도로 정한 연구개발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 2 장 연구개발사업의 운영

- 제4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 ①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4조 및 관리규정 제8조에 따라 선정평가, 단계평가(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때에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최종평가(연구개발기간이 끝나는 때에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및 혁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야 한다.
- ②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단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단을 구성하는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의 후보단(이하 “평가후보단”이라 한다)을 구성해야 한다. 다만, 혁신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평가후보단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활용할 수 있다.
-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후보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공, 연구분야, 논문실적 등이 포함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4조제2항 및 혁신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평가단을 구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제외해야 한다.

1.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
2. 제1호의 사람이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서로 다른 두 건의 연구개발과제의 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때 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가 그 서로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평가하는 관계가 되는 경우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
4.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과, 학부(해당 학부에 학과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부서 등 최하위단위 부서에 같이 소속된 사람으로 한정하여 제외할 수 있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연구기관

5.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및 전문기관의 임직원(연구개발과제 기획·분석·평가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관리전문가는 제외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내용에 따라 평가에 필요한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제4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최종평가, 특별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단을 구성하는 경우 선정평가에 참여한 사람을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별로 전문성에 맞는 책임평가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자문위원회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관리규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 등(이하 “자문위원회등”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자문위원회등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심의위원회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관리규정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 업무의 일부를 협약에 따라 대행할 수 있으며, 대행업무시의 위원구성은 관리규정 제5조의2제2항을 따른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관리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발생 가능한 다각적인 의사검토와 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협약변경 심의위원회, 연구시설장비 심의위원회,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등 전문기관 자체의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③ 본조 제2항의 심의위원회 구성은 제4조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준하는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기관의 업무추진과 관련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평가, 단계평가 등의 평가와 심의안건이 유사하거나 서로 연계성이 있는 경우 해당평가와 연계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3 장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 1 절 연구개발사업의 과제기획 및 연구개발과제의 신청

제7조(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등의 예고) ①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와 공모 일정 등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② 사전에 고지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이하 “연구개발비”라 한다)
 3. 연구개발과제의 공모 일정
 4. 연구개발과제의 지원(支援) 내용 및 기간
- ③ 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혁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예고를 해야 한다. 다만,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가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른 예산안 등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또는 당해 연도 사업을 전년도에 사전 추진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고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④ 전문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 사업을 전년도 말에 사전 공고하였을 경우에는 혁신법 제9조제1항의 예고를 실시한 것으로 갈음한다.

제8조(연구개발에 대한 수요조사) ①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 수요발굴을 위한 조사 또는 연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안보, 재난·재해 대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략적 육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수요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요조사에는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내용
2. 동향 및 파급효과
3. 수행기간
4. 정부지원 규모 및 형태

③ 제1항의 단서에서 “안보, 재난·재해 대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략적 육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란 다음 각 호의 분야를 말한다.

1. 국가 안보·국방 관련 분야
2. 재난·재해에 대한 대비 또는 극복을 위한 기술개발 분야
3.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략적 육성 분야

4. 긴급한 사회적·경제적 현안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

④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 수요조사서 서식은 별지 제1호와 같다.

제9조(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 과제의 발굴을 위해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연구용역 등을 통해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규 연구개발 과제의 발굴을 추진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세부 내용을 그 사전 기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전 기획 관련 연구 분야에 대한 지원 필요성

2. 논문 또는 특허 등 연구개발 동향

3. 기대효과

③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을 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공모하기 전에 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라 보안과제를 분류할 수 있다. 다만, 혁신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였거나 혁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 보안과제 분류 여부를 포함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에 지체없이 보안과제로 분류해야 한다.

제10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①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30일 이상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 또는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장관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목적

나. 지원 내용

다. 지원 기간

라. 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었는지 여부
(해당 사항에 대한 공고가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려는 연구개발기관의 신청 자격

가. 혁신법 제2조의 연구개발기관에 해당

나. 각 사업별 과제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가능한 기업, 기술 및 정책 연구기관,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 등의 민간단체, 학교 등

다. 해외기관은 국내 법인이 있거나 상법상 회사로 인정되는 경우

3. 신청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컨소시엄 구성요건과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나. 신청과제(연구내용)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되어 연구개발목표와 결과물의 유사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라. 신청마감일 현재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사업의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마. 과제시작일 기준 참여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 이상이거나, 동시 수행 과제 중 연구책임자로서 3개 과제 이상 참여하고 있는 경우(단, 수행중인 과제가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에 따른 제외 대상 과제인 경우는 미포함)

바.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중 어느 하나라도 부도 상태인 경우

사. 최근 결산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영리기업인 경우

아. 표준 재무제표 증명원 등 최근 결산기준의 자본잠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개인사업자 또는 신생법인이 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개인사업자의 경우 고용계약 또는 참여연구자(외부참여연구자 소속 기관장 확인한 시)로만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신청자격을 인정하며, 사업특성상 개인사업자 또는

신생법인의 참여가 필요하여 연구개발과제 공고 신청 자격조건에 반영한 경우 신청자격을 인정함)

- 자.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이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차.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이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 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카.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이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타.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이 외부감사 기업인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파.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인 경우
- 하. 기획에 참여한 과제기획위원이 해당 과제에 대하여 참여연구자로 신청하는 경우

② 혁신법 제9조제4항 및 각 호에 따라 공모에 참여하려는 기관·단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표준 연구개발계획서(이하 “연구개발계획서”라 한다)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연구개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전략·방법 및 체계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5.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
6. 연구책임자의 주요 연구실적
7. 연구책임자가 신청 또는 수행 중이거나 수행한 국가연구개발과제
8. 그 밖에 장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해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내용

- ④ 전문기관의 장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제품·장치를 직접적으로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그 제품·장치를 개선하는 연구개발과제 중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정부지원 연구개발비가 총 15억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의 전략적 조사·분석이 필요한 경우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사항을 제1항제1호나목에 포함시킬 수 있다.
- ⑥ 전문기관의 장은 공고 접수마감 이후 공고문에 포함된 예외사항에 한하여 추가 제출서류를 받을 수 있다.

제11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지정) ① 전문기관의 장은 공모를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혁신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공모 방식을 따르지 아니한다.

- ② 전문기관의 장은 공모 외의 방법으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관·단체에 연구개발계획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요청해야 하며, 이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는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이 중앙행정기관 등의 정책과 부합하지 않거나 국책성·기술성·시장성 등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의 검토 및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개발계획서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계획서 검토위원회의 구성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준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는 정해진 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 사전 검토) ① 연구개발계획서의 서

식은 별지 제2호를 준용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관리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된 연구개발과제에 접수번호를 부여하는 등 신청한 연구개발과제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해당 여부, 공고 및 제안요구에서 제시한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합 여부에 대해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제공하여 평가단의 검토를 통해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 2 절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선정

제13조(선정평가 계획의 수립) ①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 현황, 평가 일정, 평가 기준(우대 및 감점 기준 포함), 평가 방법, 평가 지표,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운영 등 신규평가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사업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가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성격을 고려하여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 계획의 충실성
2. 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3. 연구개발과제의 학술적·기술적·사회적·경제적·지역적 파급효과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가능성
4.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 근거 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과의 부합성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4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 선정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선정평가를 하려면 선정평가 대상인 기관·단체·연구자에 대하여 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대상이 아니고 본 지침 제10조제1항제2호 부합하며 제1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음

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3조 평가계획에 따라 신청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사전 서면검토 결과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장은 추가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추가자료를 요청 받은 신청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관연구책임자가 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산술평균(소수점 둘째자리 미만은 절사)을 계산한 후, 해당 사업의 공고를 통해 공지한 가·감점 사항을 반영한다. 단, 평가결과 가점 및 감점 요인이 조정된 경우는 조정된 사항을 반영한다.

⑥ 제5항의 평가시 동점에 대한 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총점(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합계)
2. 총점도 동일한 경우는 평가지표 중 연구개발내용 총점(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합계)
3. 신청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적은 순

⑦ 제6항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모두 동일한 경우는 동점으로 통과처리 한다.

⑧ 위원장은 평가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종합의견을 작성 한다.

⑨ 본조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정한 조항 이외에는 “국가연구개발 과제 평가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 이라한다)” 을 따른다.

제15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 선정통보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이 관리규정 제5조의2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선정평가 결과를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확정된 선정평가 결과를 전자우편 등을 통해 통보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협약, 관리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관련기업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 3 절 협약 및 연구개발비 등의 관리

제16조(협약의 체결) ① 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혁신법 제 11조제1항에 따른 협약(이하 “연구개발과제협약”이라 한다)을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결해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와 사용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 협약서
2. 연구개발계획서
3. 정부지원연구개발비신청서류
4. 그 밖에 해당 공고에서 정하는 사항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에서 요청하는 사항

④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관련법령의 범위 내에서 관리규정 제9조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여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을 준용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 시책 및 별도 지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협약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17조(협약의 변경) ①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 11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추진과 성과창출을 위해 협약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협약변경 신청서식은 별지 제4호와 같다.

② 협약변경의 신청은 주관연구개발기관만 가능하며,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의 변경사항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확인하여 진행한다.

③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의 장에게 협약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내용에 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승인사항과 통보사항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요청하여야 한다. 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기관을 추가·변경
2. 연구책임자 변경
3. 연구개발 목표 변경
4. 연구개발비 변경
5. 연구개발기간 변경
6.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관한 중요사항 변경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서 요청된 협약변경 요청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원래과제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요청사항을 거부할 수 있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안건의 경중을 확인하여 사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하여 검토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해당연구개발과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방법의 변경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는 제외한다)의 변경
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을 늘리는 사항은 제외한다)
4. 연구개발기관의 연락처,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이하 “연구지원인력”이라 한다)의 변경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
5.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효율적이고 쉬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장관과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별도로 정한 사항
6. 장관이 혁신법 제12조제3항 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변경하게 되어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

제18조(협약의 해약) ① 전문기관의 장은 관리규정 제12조제1항에 따른 협약 해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약이전에 그 내용을 장관에게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비의

집행 중지, 현장 실태조사, 연구개발비 정산 및 회수,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협약이 해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약된 시점까지의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혁신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는 혁신법 시행령 제26조를 준용한다.

제19조(연구개발비의 계상 및 사용) ①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라 한다)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사업 또는 과제의 경우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 및 계상 기준은 혁신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따른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③ 제1항부터 제2항 이외의 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에 관한 사항은 혁신법 시행령 제19조를 따르며, 연구개발비의 항목별 산정 및 조정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하 “연구개발비사용기준”이라 한다)을 따른다.

제20조(연구개발비의 관리)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관리하는 경우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연구개발과제마다 별도의 계정을 생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경우 연구개발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지출해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 계좌를 개설하여 연구개발비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④ 연구시설·장비의 구축 및 활용과 관련하여서는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따른다.

제21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비 사용실적(혁신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른 이자총액과 그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을 포함한다.) 보고서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을 적어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보고할 수 있다.

제22조(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21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용실적보고서의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이 혁신법 제13조제4항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 정산은 다음 각호의 연구개발비를 대상으로 한다.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
 3.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4.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현금)에서 발생한 이자
-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정산 검증을 위해 외부 회계기관의 장에게 의뢰 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정산 검증에 필요한 사용실적보고서 및 관련 증빙 등을 외부 회계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한다.
-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 정산결과를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정산결과를 통보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1회에 한함)을 하거나 회수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으로 정산결과가 변경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변경된 정산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회수금액을 10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 4 절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및 보고서의 제출

제23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연구개발성과 등에 대하여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연구개발기간이 끝나는 때에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이하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나 장관이 평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진행을 위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한 자료를 제시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매년 해당연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연구개발성과 등에 대한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는 다음 각 호의 평가사항을 말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 내용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3.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4.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5. 혁신법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른 단계평가 이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

⑤ 장관은 단계평가 또는 혁신법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최종평가의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을 분류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이 부적절하고 연구개발성과가 그

수행계획에 비하여 매우 미흡한 경우에는 극히 불량 등급을 정하여 그 등급으로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의 결과를 평가하도록 분류해야 한다.

⑥ 제1항의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나 장관이 평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
2. 대상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장관이 평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가 1억원 이하인 경우

제24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에 따른 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단계평가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혁신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도록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평가의 결과가 극히 불량 등급인 경우
2. 「과학기술기초법 시행령」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공고된 연구수행의 지속가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중단에 대한 보고를 받은 장관이 해당과제를 중단하고자 할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의 중단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된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통지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5조(단계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단계평가를 위한 연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단계평가를 위해 제4조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단계평가는 서면검토와 발표평가 또는 시연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시 장관과 협의하여 단계평가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는 단계평가 평가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단계평가 시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산술평균(소수점 둘째자리 미만은 절사)을 적용하여 평가결과를 종합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류할 수 있다.

1. 우수 : 평균점수가 90점 이상인 과제

2. 보통 : 평균점수가 60점 이상 90점 미만 범위 내 과제

3. 미흡 : 평균점수가 60점 미만 과제

4. 극히 불량 :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 중 수행과정이 부적절하고 연구개발성과가 수행계획 대비 매우 미흡한 과제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의 각호에 따른 조치방안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에게 단계평가 결과를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계속수행(우수, 보통, 미흡) 평가 과제 : 주관연구책임자는 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평가의견을 반영한 보완된 연구개발 계획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 지원연구개발비 지급 등을 하여야 한다

2. 중단(극히 불량) : 혁신법 제12조제3항의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되거나, 혁신법 제15조제1항의 특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되는 경우 협약 해약 및 연구시설·장비의 재배치, 연구개발비 정산 및 정밀검토, 제재처분 절차 등을 이행할 수 있다

⑧ 제7항제1호의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주관

연구책임자는 계속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⑨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가 제8항에 따른 일체의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 사실을 장관에게 보고한 후 제7항제2호에 따른 후속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최종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의 최종평가를 위한 연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평가를 위해 제4조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③ 최종평가는 주관연구책임자에 의한 구두발표를 원칙으로 평가하며, 필요시 일반인에게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대상과제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연구결과에 대한 포스터, 연구성과물의 전시 및 시연, 연구발표회 등을 통한 평가를 최종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은 최종평가 평가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각 평가위원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류한다. 이 경우 평가결과의 평균점수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점수의 평균으로 한다.

1. 우수 : 평균점수가 90점 이상인 과제

2. 보통 : 평균점수가 60점 이상 90점 미만 범위내 과제

3. 미흡 : 평균점수가 60점 미만 과제

4. 극히 불량 :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 중 수행과정이 부적절하고 연구개발성고가 수행계획 대비 매우 미흡한 과제

⑥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평가결과 및 그 후속조치방안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의 평가결과를 해당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평가결과 “우수” 로 평가된 과제는 과제 종료일이 포함된 다음해부터 2년간 선정평가(연구책임자가 지원한 과제로 한정)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고, “극히 불량” 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한 경우 장관의 제재처분 요구 등에 따라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특별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특별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제4조의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별평가를 실시 이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특별평가 실시 시기

2. 특별평가 실시 사유

3. 소명 자료의 제출 시한

4. 특별평가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

③ 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는 관련 자료의 검토 및 소명과 연구개발 내용 발표의 형태로 진행 하며 발표 이외에 서면평가, 공개평가 등 평가방식을 달리 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은 특별평가 평가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별로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제를 분류한다.

1. 계속지원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과제

2. 계속지원(변경) : 연구개발과제의 변경을 통하여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과제

3. 중단 : 연구수행을 중단하는 과제

4. 조기완료 : 당초의 계획보다 빠르게 조기에 목표를 달성하였거나, 개발목표가 타 연구에서 달성되는 등 환경변화에 따라 연구기간을 단축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되는 과제

⑥ 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평가결과 및 그 후속조치방안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의 평가결과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고, 협약변경, 해약, 장관의 제재처분 요구 등에 따라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또는 연구책임자 등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었거나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⑨ 전문기관의 장은 제8항제1호, 제2호에 따라 특별평가를 거쳐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최종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제28조(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1. 평가결과 의견 중 평가자의 결정적 오류가 발견되어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2. 연구개발과제(연구업적 등)의 내용을 명백히 잘못 해석하여 평가한 경우
3. 전문기관의 명백한 행정오류의 경우
4. 기타 이의신청의 타당성이 높은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평가단·평가위원 선정, 연구비 결정, 평가규정 및 절차, 평가방식(상대·절대·혼합, 서면·토론·발표, 블라인드, 평가단계 등)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명칭 및 주소
2.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
3. 통보된 평가 결과
4.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검토하기 위해 제6조제2항의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주요내용, 심의결과 및 그 후속조치방안을 장관에게 보고하고,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제 5 절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활용촉진

제29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① 혁신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그 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다.
2.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른다.
3.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협약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국가소유연구개발성과(혁신법 제16조3항, 동법 시행령 제32조제2항)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로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하려면 특허출원서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명칭
2. 연구개발과제의 식별을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부여하는 연구개발과제 번호
3.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제30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종료된 연구개발과제를 대상으로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료된 다음연도부터 5년 동안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연구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성과의 유지·관리·공동활용,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연계,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추가적인 연구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혁신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등록 또는

기탁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발표회, 전시박람회, 포상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혁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직접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거나 동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려는 자와 연구개발성과실시에 관한 계약(이하 “기술실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상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⑥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유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때 같은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연구개발성과실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구개발성과실시를 요청해야 하며, 그 요청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그 실시를 허락해야 한다. 이 경우 실시 기간 및 조건은 서로 합의하여 정하되, 다른 자보다 실시를 요청한 연구개발기관에 실시 기간 및 조건을 우대해서 정해야 한다.

⑦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국내외에 출원·등록한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려는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지식재산권 포기에 대한 신청 이전 해당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연구자 또는 중소기업에 양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양수인 또는 양수기관이 없는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포기 승인을 위한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⑧ 제7항의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34조를 따른다.

제31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①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는 연구결과물에 대해 홍보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업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는 혁신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

다. 다만,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의 특성상 출판이나 학술지 게재가 필요한 경우 등의 사유로 비공개 등 기한을 달리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성과 비공개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2.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3. 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4.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려는 경우
5. 외국의 정부·기관·단체와의 협정·조약·양해각서 등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성과를 임치한 경우
7. 그 밖에 영업비밀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내
2. 제3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 6개월 이내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 기간을 연장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4항에 따라 승인된 비공개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그 기간이 끝나기 전날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비공개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장관은 그 사유를 검토하여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비공개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관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

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기관 및 실시기업에 대해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실시기업의 대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이전·확산 및 사업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 6 절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33조(기술료의 산정 및 납부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에 따라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사용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기술료 징수결과 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혁신법 제18조제2항에서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하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④ 기술료등 납부의무기관은 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매출액 관련 자료 및 기술실시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⑤ 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1. 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장관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2. 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와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동법 시행령 제4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와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 ⑥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서 정하는 납부고지서를 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 ⑦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으로부터 징수하는 기술료는 혁신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기술료 금액을 산정하여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⑧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 납부액과 납부기한을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서면(전자우편, 전자문서 등)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납부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⑨ 제7항에 따른 기술료 납부사항을 고지 받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은 그 서면을 송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기술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또는 부도 등 일시적인 경영 악화로 인해 그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직접 또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 ⑩ 전문기관의 장은 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종합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고 납부고지서의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34조(기술료의 사용) ①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혁신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장관에게 납부한 금액은 제외한다)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1.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2.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3.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4. 운영경비

②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을 제외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 중 총 연구개발비 대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율 상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비율로 사용하여야 하며, 제2호의 경우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 50% 이상
2. 기술이전·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비용 : 15% 이상
3.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 10% 이상
4. 연구개발 재투자 및 기관운영경비 등: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기술료 금액

③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와 제3호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위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 및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기술료 사용실적을 별도로 정하는 기술료 징수 및 사용현황 보고서에 따라 다음해 2월 28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3월 31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료 사용금액 중 연구개발에 재투자한 실적이 우수한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에 대하여는 제18조에 따른 최종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 4 장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제35조(권리보호) ① 부정행위를 인지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증거를 획득한 자가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전문기관의 장 및 장관에 구술·서

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린 자(이하 “제보자”라 한다)에 대해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②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제1항의 불이익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제보자의 소속기관과 함께 제보의 접수와 검증에 관계된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이 책임을 진다.

③ 제보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수행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대상이 된 자(이하 “피조사자”라 한다)에 대해 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조사기관의 장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④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6조(부정행위 조사) ① 부정행위를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검증 책임은 부정행위를 한 연구자의 소속 연구개발기관에 있으며,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른 자체규정에 의해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에 의해 자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이관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정행위 조사결과 부정행위로 판정한 경우, 판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예비조사 및 본조사로 구분하는 경우 본 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4.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예비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5.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6. 관련 증거 및 증인(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7.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8. 부정행위 조사에 따른 판정결과 및 향후 처리계획 등

제37조(부정행위조사 검증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36조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조사내용·결과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추가적인 조사 실시 또는 조사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검증·조치를 위하여 동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전문가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접 조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자체적인 검증·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보고 내용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혁신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를 조사하는 경우
4.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부정행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기한 내에 연구개발기관이 자체적인 검증·조치 등을 하지 않은 경우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직접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부정행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 연구개발비에 대한 재정산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현지조사를 실시하거나 증빙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서류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직접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조사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과정에서 전문기관의 장 및 조사위원회의 장이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연구자 등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38조(부정행위조사결과 후속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37조에 따른 부정행위 조사결과를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통보한다. 이 경우 조사결과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책임이 있으며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관련 규정에 의해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부정행위 조사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한 후 필요시 협약해약, 제재처분 및 연구개발비 환수 등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및 연구개발비 환수) ① 전문기관의 장은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 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 대행 협약에 따라 혁신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운영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본 조항에 따라 제재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제재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하여 제재처분의 필요성, 제재처분의 종류·수준 등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1. 제재대상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2. 제재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자
3. 제재대상자와 같은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④ 제재처분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

속 임직원에 대하여 제재처분의 종류·수준 등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재처분 검토 시 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제한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검토하고, 제재부가금은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연구개발성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단계평가, 최종평가 등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이나 연구개발성과 등의 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혁신법 제15조제1항의 특별평가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3.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혁신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5.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혁신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⑤ 제4항에 따른 참여제한 처분이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제재처분과 별도로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 중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다.
- ⑦ 제재처분평가단은 제재처분을 하거나 연구개발비 환수가 필요할 때에는 제재사유의 중대성, 위반행위의 고의 유무, 위반 횟수,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단계 및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⑧ 제4항에 따른 제재처분은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또는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종료일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 ⑨ 제2항에 따른 제재사유별 참여제한의 기준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제6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환수의 기준 및 범위는 혁신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다.

제 5 장 적용특례

제40조(연구개발비 사용기준 특례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사용기준」 제2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단계 보고서에 계상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단독 판매처 등의 정당한 사유로 계상한 시험·검사·분석에 필요한 비용
2. 정부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과 그 연구개발기관의 분원 간 발생하는 비용

② 전문기관의 장은 영리법인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사용기준」 제6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단계보고서에 현금으로 계상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중소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2.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3.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 6 장 보안대책

제41조(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연구개발성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거나 국가안보를 위하여 보안이 필요한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관리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수립·시행 실태 및 제3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내용, 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의 분류 기준, 제3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 점검 및 조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연구개발과제 보안과제 분류) ①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소관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지정·해제하는 등 분류가 필요할 때에는 검토를 위하여 해당 연구개발 분야 및 보안업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안과제분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절차를 통해 보안과제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는 보안과제 분류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수행 예정이거나 수행하고 있는 보안과제에 대하여 재분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안과제분류위원회에 보안과제 여부를 재분류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수행 예정이거나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보안과제로 분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보안과제분류위원회에 보안과제로 분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하거나 해제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련 정보를 장관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한다.

1. 보안과제명
2. 보안과제 수행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
3. 보안과제 분류 또는 해제 사유

제43조(연구보안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기관 내에 연구보안심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연구기관보안대책의 수립·변경(연구보안에 관한 자체규정의 제·개정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2. 혁신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를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

3. 혁신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에 관한 자체점검 결과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방안에 관한 사항
 4. 제45조에 따른 외국 정부 등과의 접촉 관리에 관한 사항
 5. 제46조에 따른 외국 연구자 등의 참여에 관한 사항
 6.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계획 및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7. 연구기관보안대책을 위반한 연구자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
 8. 보안과제 참여 연구자에 대한 보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보안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그 밖에 연구보안심의회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구기관보안대책으로 정한다.

제44조(보안교육 및 보안서약)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보안과제를 수행할 예정이거나 수행하고 있는 연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이 지침에 따른 연구자의 의무 사항
2. 연구기관보안대책에 따른 연구자의 의무 사항
3. 보안과제 수행에 따른 우대조치에 관한 사항
4.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안사고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연구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안서약서의 서식은 별지 제6호 서식을 따르며,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그 내용을 준용하여 정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보안과제를 수행하지 않는 소속 연구자와 기타 소속 직원에 대해서도 보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히 보안상 필요한 경우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45조(외국 정부 등과의 접촉 관리 등) ① 보안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연구자가 외국 정부·기관·단체 등과 접

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접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접촉 일시·장소·방법·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현재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안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연구자가 외국 정부·기관·단체 등의 지원을 받아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사전에 연구보안심의회 심의를 거쳐 현재 연구자가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 제2항에 따라 사전 승인한 사항을 보고 및 승인 후 1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과 장관에게 보고하고 국가정보원장에 통보한다.

제46조(외국 연구자 등의 보안과제 참여 등) ① 보안과제에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참여는 내국인을 통한 목적달성이 어려울 경우 보충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보안과제에 관하여 외국 정부·기관·단체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거나 연구의 일부를 수행하게 하려는 경우 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보안과제에 대해 외국인 참여를 승인하고자 할 경우 제43조에 따른 연구보안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때 연구보안심의회는 외국인의 보안과제에의 기여 가능성, 기술격차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외국에의 기술 유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었거나 제3항에 따라 보안과제에 외국인을 참여시킨 경우 해당 사항이 발생하고 1월 이내에 해당 보안과제에서 외국 연구개발기관 등과 공동연구 등을 위한 협약사항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 또한 참여 외국인의 신상 및 과제 참여 범위, 과제 관련 정보 접근 권한의 범위 등의 정보를 전문기관의 장과 장관에게 보고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7조(보안등급 표기)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보안과제 수행과정에서 산출되는 문서와 다양한 형식의 자료 및 데이터에 대하여 추가적인 보안

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추가적인 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등급을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기관보안대책에 따라 보안등급의 구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보안등급을 정하기 어려울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구분을 준용할 수 있다.

1. I 급 : 유출될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일으키며,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보안과제의 핵심적인 정보
2. II 급 : 유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경쟁력 확보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보안과제의 핵심적인 정보로 문서 유출이 과제 중요사항의 직접적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3. III 급 : 유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 경쟁력 확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보안과제의 핵심적인 정보로 문서 유출이 과제 중요사항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문서의 종류와 보안등급에 관한 사항은 연구기관보안대책으로 정한다.

제48조(보안과제 수행에 따른 우대조치)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에 대하여 보안수당 지급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49조(보안관리 실태 점검) ① 혁신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장관이 수립하는 보안관리 실태 점검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기관보안대책의 수립·시행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2. 이 지침에 따른 의무사항의 이행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3. 연구기관보안대책에 따른 의무사항의 이행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4. 보안관리 실태 점검의 시기·방법에 관한 사항

② 전문기관의 장과 장관은 혁신법 제21조제4항 및 혁신법 시행령 제47조 따른 보안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할 때에 국가정보원장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제50조(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

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과 장관에게 보안사고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국가정보원장에 통보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 또는 장관은 혁신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에 따른 보안 사고 경위 조사를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한다.

1. 조사방식(서면 또는 현장) 및 조사시기
2. 조사범위 및 조사방법
3. 조사반 구성
4.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

제51조(연구개발결과에 따른 보안과제 분류)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결과에 따라 보안 과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혁신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평가를 할 때에 연구개발과제평가단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결과를 고려한 보안과제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를 고려했을 때 보안과제로의 분류가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해당 보안과제는 보안과제분류위원회의 검토 없이 보안과제에서 해제된 것으로 보며, 제4조제4항에 따라 보고 및 통보한다.

제52조(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실시) ① 보안과제를 통해 창출된 연구개발성과를 협약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기관은 그 성과의 소유권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과제로부터 창출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을 국내의다른 기관으로 이전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이전받는 기관이 제44조부터 제55조까지를 적용받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때 제44조부터 제55조의 '연구개발기관'은 성과를 이전받는 기관으로 본다. 다만 외국으로의 소유권 이전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장과 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보안과제의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다른 기관과 실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제3자 기술 실시(사용)권 금지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외국기업 또는 외국으로 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

어야 한다.

제53조(비공개 연구개발성과에의 준용) 이 대책은 혁신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과 관련된 비공개 연구성과에 대해서도 준용하여 적용한다. 단, 제42조 및 제48조는 적용하지 않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장관에 비공개를 요청할 때 과제의 특성에 따라 제45조와 제46조, 제50조, 제52조의 적용을 완화하거나 제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4조(권한의 대행) ① 장관은 보안과제의 관리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부재 또는 전문기관에 관련 보안 취급이 불가능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42조, 제45조 및 제46조, 제51조의 사무를 보안관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당해 과제의 전문기관이 대행하도록 하며, 제49조, 제50조, 제52조까지의 사무는 필요시 전문기관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전문기관으로서 제42조의 사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의 수행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의 관리를 전문기관이 대행하고 있는 경우 보안과제분류위원회는 전문기관에 두어 운영한다.

제55조(보안사고 처리)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를 인지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는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본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안사고에 대해 별도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경위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 등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보안사고에 대한 조사가 끝날 때까지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및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2022.12.0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목록

-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 사업관리 지침[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4항 관련> 연구개발 수요조사서 서식
-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 사업관리 지침 [별지 제2호 서식] <제12조제1항 관련>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사업관리 지침 [별지 제3호 서식] <제16조제2항 관련> 연구개발사업 협약서 서식
-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사업관리 지침 [별지 제4호 서식] <제17조제1항 관련> 연구개발과제 변경 및 중단요청서 서식
-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사업관리 지침 [별지 제5호 서식] <제32조제4항 관련> 이의신청서 서식
-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사업관리 지침 [별지 제6호 서식] <제37조제6항 관련>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앞표지 작성 요령 (작성 요령은 제출 시 삭제)

- 기술명: (적용 유형)의 (연구 최종목표)를 위한 (기술개발 내용·수준명) ’ 형태로 기재 요망
 ☞ 예시) **홀로그램 공연의 실시간 무대-관객 인터랙션을 위한 대용량 영상 전송 기술 개발**
- 연구개발개요: 수요기술의 핵심기술, 목표 및 내용, 활용계획 등 간략히 서술
- 세부사업명: 해당 세부사업명에 ☑ 표시
- 기술표준분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중 해당 기술분류 작성
- 기술성숙도: 특정기술(재료, 부품, 소자, 시스템 등)의 성숙도로서 최종 연구개발 목표, 내용, 최종 결과물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9단계 중 해당하는 단계를 선택

구분	단계	내용	비고
1) 기초연구단계	1단계	기초 이론·실험	* R&D 영역에서는 9단계는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2단계	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 정립	
2) 실험단계	3단계	연구실 규모의 기본성능 검증	
	4단계	연구실 규모의 소재·부품·시스템 핵심성능 평가	
3) 시작품단계	5단계	확정된 소재·부품·시스템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6단계	시범규모의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4) 제품화단계	7단계	신뢰성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8단계	시제품 인증 및 표준화	
5) 사업화단계	9단계	사업화	

1. 수요기술 개요

1) 수요기술 내용 및 기능

(개발 또는 적용하고자 하는 핵심기술)

○

(기술의 기능/범위) - 핵심기술이 적용된 결과물이 어떤 기능, 동작을 하는지 등을 최대한 쉽게 설명

○

2) 활용계획 및 추가 적용이 가능한 분야

(활용계획) 개발 또는 적용하고자 하는 핵심기술의 활용계획

○

(적용처) 본 제안 내용 외 활용이 가능한 분야 등

○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1) 목표 및 내용

목표	
연구개발 내용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2) 제안 취지 및 필요성(해당 시 작성)

.

.

3) 기존 선행연구(해당 시 작성)

.

.

3. 국내외 동향

국내 동향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해외 동향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4. 예산 규모 및 수행자 요건

1) 연구개발 기간 및 예산 규모

※ 추가 연차가 필요한 경우 표를 확장하여 기재

구분	예산개발기간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합계
예산 연구개발비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억원

2) 연구자 제약사항

※ 주관연구개발기관을 산업체, 대학 및 연구소 등에 한정해야 하는 경우 '기관 유형 및 사유' 를 기재

.

.

5. 파급효과 및 특이사항

파급효과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특이사항 (해당 시)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첨부 : 필요 시 자료 첨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수요조사 내용 활용 및 필요 시 기획위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항목
 - 제안자 성명, 소속 기관명, 부서명, 직급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보유·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 되는 시점까지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여부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 수요조사서 (일반인 및 산업계 관계자)

제안명	☞ 예시) 공연현장의 장애인 참여 활성화를 위한 자막 기술 개발 필요			
관련분야	콘텐츠 <input type="checkbox"/>	문화예술 <input type="checkbox"/>	관광 <input type="checkbox"/>	
	스포츠 <input type="checkbox"/>	저작권 <input type="checkbox"/>	기타(응복합 등) <input type="checkbox"/>	
세부분야	☞ 예시) 공연, 전시, 게임, 스포츠용품 등			
제안자	기관명		부서/직급	
	성명		직장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지역	서울 <input type="checkbox"/> 부산 <input type="checkbox"/> 대구 <input type="checkbox"/> 인천 <input type="checkbox"/> 대전 <input type="checkbox"/> 울산 <input type="checkbox"/> 광주 <input type="checkbox"/> 경기 <input type="checkbox"/> 강원 <input type="checkbox"/> 충남 <input type="checkbox"/> 충북 <input type="checkbox"/> 전남 <input type="checkbox"/> 전북 <input type="checkbox"/> 경남 <input type="checkbox"/> 경북 <input type="checkbox"/> 제주 <input type="checkbox"/> 세종 <input type="checkbox"/> 국외 <input type="checkbox"/> (국가명:)		
	기관유형	기업 <input type="checkbox"/> 대학 <input type="checkbox"/> 단체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		

(관련분야의 애로사항 또는 문제점)

。

(요구 기술의 기능/범위) - 핵심기술이 적용된 결과물이 어떤 기능, 동작을 하는지 등을 최대한 쉽게 설명

。

(활용계획) 요구 기술의 활용계획

。

본 제안 내용 외 활용이 가능한 분야 등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수요조사 내용 활용 및 필요 시 기획위원 활용

수집하는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항목

○ 제안자 성명, 소속 기관명, 부서명, 직급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보유·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여부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별지 2>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 사업관리 지침 [별지 제2호 서식] <제12조제1항 관련>

(26쪽 중 1쪽)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용 <input checked="" type="checkbox"/> 협약용 <input type="checkbox"/>		보안등급					
				일반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안 <input type="checkbox"/>			
중앙행정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공고사업명		작성요령 참고			
전문기관명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개발과제번호		(신청 시 기입 불필요)			
선정방식		정책지정 [] 공 모: 일반지정 [] 품목지정 [] 일반자유 [] 품목자유 []							
기술 분류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1순위 소분류명 (코드명)	%	2순위 소분류명 (코드명)	%	3순위 소분류명 (코드명)	%		
연구개발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개발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기관유형		법인등록번호					
		주소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성명		국가연구자번호					
		소속부서		직급(직위)					
		직장전화		전자우편					
		휴대전화							
연구개발기간		전체		YYYY. MM. DD - YYYY. MM. DD(년 개월)					
		1단계		YYYY. MM. DD - YYYY. MM. DD(년 개월)					
		n단계		YYYY. MM. DD - YYYY. MM. DD(년 개월)					
연구개발비 현황 (천원)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합계		
		현금 (A)		현금 (B)	현물 (C)	소계 (B+C)	현금 (A+B)	현물 (C)	합계 (A+B+C)
		총계							
		1단계							
n단계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기관명		사업자 등록번호	기관유형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정보			
						책임자명	직위	휴대전화	전자우편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 실무담당자		성명		직급(직위)					
		직장전화		전자우편					
		휴대전화		국가연구자번호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모든 의무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이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과제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서명 생략)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생략)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생략)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생략)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 요약 문 >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신청 시 기입 불필요)	
기술 분류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1순위 소분류명 (코드명)	%	2순위 소분류명 (코드명)	%	3순위 소분류명 (코드명)	%		
연구개발과제명									
전체 연구개발기간									
총 연구개발비 (단위:천원)		총 천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천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천원)							
연구개발단계		기초 [] 응용 [] 개발 [] (위 3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기타 []			기술성숙도 (필수기제)		착수시점기준		
							종료시점목표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최종 목표								
	연구 내용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국문핵심어 (5개이내)									
영문핵심어 (5개이내)									

목 차

	<p>1. 연구개발의 필요성 1</p> <p>1-1. 연구개발의 개요 0</p> <p>1-2. 연구개발 대상의 국내외 현황0</p> <p>1-3. 연구개발의 중요성(필요성)0</p> <p>1-4. 선행 연구 내용 및 결과0</p> <p>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0</p> <p>2-1. 연구개발 최종목표0</p> <p>2-2. 단계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0</p> <p>2-3. 연구개발의 창의성·혁신성 등0</p> <p>2-4. 연구개발 성능지표 및 평가방법0</p> <p>3.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일정0</p> <p>3-1. 연구개발 추진전략·방법0</p> <p>3-2. 연구개발 추진체계0</p> <p>3-3. 연구개발 추진일정0</p> <p>4. 마일스톤 체계 및 수행계획0</p> <p>5.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0</p> <p>5-1.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0</p> <p>5-2. 기대효과0</p> <p>5-3. 사업화 전략 및 계획0</p>
<p>본문 1 (30페이지 내외작성)</p>	
<p>본문 2 (작성분량 제한없음)</p>	<p>6. 연구개발기관 현황0</p> <p>6-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0</p> <p>6-2.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0</p> <p>6-3.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현황0</p> <p>6-4.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실적0</p> <p>7. 참여연구자 및 연구개발비0</p> <p>7-1.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참여연구자 현황0</p> <p>7-2.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획0</p> <p>8. 연구개발 안전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0</p> <p>8-1. 안전조치 이행계획0</p> <p>8-2. 보안조치 이행계획0</p>

1

연구개발의 필요성

1-1. 연구개발의 개요

-
-
-
-

1-2. 연구개발 대상의 국내외 현황

-
-
-
-

1-3. 연구개발의 중요성(필요성)

-
-
-
-

1-4. 선행 연구 내용 및 결과

-
-
-
-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2-1. 연구개발 최종목표

<p>최종 목표</p>	<p>○</p>
<p>세부 목표</p>	<p>○</p>

2-2. 단계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1 단계

① 개발 목표

- 주관연구개발기관 : 기관명 기입
-
- 공동연구개발기관1 : 기관명 기입
-
- 공동연구개발기관2 : 기관명 기입
-
- 위탁연구개발기관 : 기관명 기입
-

② 개발 내용

- 주관연구개발기관 : 기관명 기입
-
- 공동연구개발기관1 : 기관명 기입
-
- 공동연구개발기관2 : 기관명 기입
-
- 위탁연구개발기관 : 기관명 기입
-

n 단계

n 단계

2-3. 연구개발의 창의성·혁신성 등

○

-

2-4. 연구개발 성능지표 및 평가방법

가-1. 결과물의 성능지표

주요 성능지표 ¹⁾	단위	개발목표치 ²⁾			비교수준 ³⁾	가중치 ⁴⁾	평가방법 ⁵⁾
		1 단계	n 단계	n 단계			
총돌 처리속도	Hz	300	400	600			공인시험인증기관

가-2. 평가방법 및 평가환경

주요 성능지표	세부 평가방법 및 평가환경

나. 성과물 목표

단계	성과물 목표
1 단계	○ ○ ○
n 단계	
n 단계	
과제 종료 후 (2년 이내)	

4 마일스톤 체계 및 수행계획

1 단계

개발 목표	번호	마일스톤 명	목표 일정	핵심 수행기관	주요 가시적 결과물	점검기준	점검방법
1.	1.1	OO 구축	YY.MM~ YY.MM				
	1.2	OO 도출					
	1.3	OO 도출					
	1.4	OO 최적화					
2.	2.1						
	2.2						
	2.3						
3.	3.1						
	3.2						
	3.3						

n 단계

n 단계

5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5-1.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

-

5-2. 기대효과

○

-

5-3. 사업화 전략 및 계획

사업화 모델(BM)	
사업화 추진 주체	
시장분석	○
사업화 전략 및 계획	○

6 연구개발기관 현황

6-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가. 인적 사항

성명	국문		생년월일(성별)	YY.MM.DD()
	영문		국가연구자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팩스번호	
	직위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나. 학력(대학이상 기재)

단계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 교수
YY.MM ~ YY.MM				
~				

(최종 학위 논문명)

다. 경력

단계	기관명	부서 및 직위	담당 업무 / 비고
YY.MM ~ YY.MM			
YY.MM ~ YY.MM			
YY.MM ~ YY.MM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로 작성하되, 신청중이거나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필수 작성)

중행장기 관 (전문기관)	세부사 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 관 당시 소속기관	연구개발기간 (참여한 기간)	역할 (연구책임자/ 연구자)	비고 (신청/수행중/ 완료)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마. 대표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로 작성)

구분 (논문/저서)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단계 (발표단계)	역할	등록번호 (ISSN)	비고 (피인용 지수)
			yy			
			yy			
			yy			
			yy			
			yy			

바.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로 작성)

구분 (특허/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자 수	비고

사.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

연구 과제명	연구 수행 기관	참여 시작일	참여 기간(개월)	참여율
부처명/사업명	참여 유형	참여 종료일	해당 단계 연구개발비(천원)	
		YYYY. MM. DD		
		YYYY. MM. DD		
		YYYY. MM. DD		
		YYYY. MM. DD		

아. 연구윤리 수준관련

번호	내용	있음	없음
1	◦ 현재까지 연구개발의 제안, 수행, 결과보고와 관련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등 부정행위 유무(자체연구 및 국가R&D사업 등 모든 연구를 포함)		
2	◦ 현재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조치 유무		

○

○

* 상기 1, 2에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세부내용 및 의견 기재

6-2.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가. 인적 사항

성명	국문		생년월일(성별)	YY.MM.DD()
	영문		국가연구자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팩스번호	
	직위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나. 학력(대학이상 기재)

단계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 교수
YY.MM ~ YY.MM				
~				

(최종 학위 논문명)

다. 경력

단계	기관명	부서 및 직위	담당 업무 / 비고
YY.MM ~ YY.MM			
YY.MM ~ YY.MM			
YY.MM ~ YY.MM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로 작성하되, 신청중이거나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필수 작성)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세부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간 (참여한 기간)	역할 (연구책임자/연구자)	비고 (신청/수행중/완료)
			당시 소속기관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마. 대표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로 작성)

구분 (논문/저서)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단계 (발표단계)	역할	등록번호 (ISSN)	비고 (피인용 지수)
			yy			
			yy			
			yy			
			yy			
			yy			

바.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로 작성)

구분 (특허/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자 수	비고

사.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

연구 과제명	연구 수행 기관	참여 시작일	참여 기간(개월)	참여율
부처명/사업명	참여 유형	참여 종료일	해당 단계 연구개발비(천원)	
		YYYY. MM. DD		
		YYYY. MM. DD		
		YYYY. MM. DD		
		YYYY. MM. DD		

아. 연구윤리 수준관련

번호	내용	있음	없음
1	◦ 현재까지 연구개발의 제안, 수행, 결과보고와 관련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등 부정행위 유무(자체연구 및 국가R&D사업 등 모든 연구를 포함)		
2	◦ 현재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조치 유무		

-
-

* 상기 1, 2에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세부내용 및 의견 기재

6-3.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현황

기관명		기업(기관)유형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국적/성별
설립년월일	YYYY.MM.DD		휴대전화
최대주주성명(국적)			이메일
주 소			
기관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생산 품목			
기업(기관)소개			
주요연혁			

기 업 현 황			
연 도 구 분	20XX년 (최근결산 3년 전)	20XX년 (최근결산 2년 전)	20XX년 (최근결산 1년 전)
상시 종업원 수(명)			
매출액(백만원)			
영업이익(백만원)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부채비율(%)			
유동비율(%)			
이자보상비율			
자본잠식 현황	자본총계(백만원)		
	자본금(백만원)		

실무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부서명		휴대전화번호	
직위		전자우편	
연구지원부서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부서명		휴대전화번호	
직위		전자우편	

6-4.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실적

가.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현황(최근 5년간의 실적 기재)

연구개발기관명 (소유권자)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

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수행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 기재)

연구개발과제 명	주관연구개발기 관명	연구개발기간 (참여기간)	수행내용	중앙행정기 관 (전문기관)	비고 (수행중/완료)
	연구개발기관명 및 역할 (주관/공동)				
		yy.mm.dd~yy.mm.dd (yy.mm.dd ~yy.mm.dd)			
		yy.mm.dd~yy.mm.dd (yy.mm.dd ~yy.mm.dd)			

※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5년을 초과하더라도 ‘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 또는 ‘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기재해야 함

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 기재)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기술이전 유형	기술실시계약명	기술실시기관명	기술실시발생일	기술료	기술료 누적 징수액

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 기재)

(단위: 천원, 달러)

연구개발기관명	사업화 방식 ₁	사업화 형태 ₂	지역 ₃	사업화명	내용	업체명	매출액		매출 발생단계	기술 수명
							국내	국외		

- 1) 기술이전 또는 자기실시 중 해당사항을 기재
- 2)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 공정 개선 등에서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
- 3) 국내 또는 국외 중 해당사항을 기재
-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에 등록된 것에 한함

마. 연구시설·장비 보유현황(해당 시 작성)

보유기 관	연구시설·장비 명	규격	수량	용도	활용시기	현물부담 반영여부 (해당 시 "○")

7-2.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획

가. 연구개발비 지원·부담계획

(단위: 천원)

구 분		주관연구개발기관명	공동연구개발기관명n	공동연구개발기관명n	합계
1 단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현금			
		현물			
		소계			
합계					
n 단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현금			
		현물			
		소계			
합계					
n 단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현금			
		현물			
		소계			
합계					
총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현금			
		현물			
		소계			
합계					

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1) 연구개발기관별 사용계획

(단위: 천원)

비목	주관연구개발기관명		공동연구개발기관명n		합계		위탁연구개발 기관명n(해당시)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1. 직접비							
1.1 인건비							
1.2.1 학생인건비(일반) ₁							
1.2.2 학생인건비(특례) ₂							
1.3.1 연구시설·장비비(일반) ₃							
1.3.2 연구시설·장비비(특례) ₄							
1.4 연구재료비							
1.5 위탁연구개발비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6 연구활동비							
1.7 연구수당							
2. 간접비							
2.1 인력지원비							
2.2 연구지원비							
2.3 성과활용지원비							
합계							

-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장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학생인건비를 기재(삭제하지 말 것)
-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장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학생인건비를 기재(삭제하지 말 것)
- 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장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연구시설·장비비를 기재(삭제하지 말 것)
- 4)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장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연구시설·장비비를 기재(삭제하지 말 것)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기재	주관연구개발기관명	공동연구개발기관명n	위탁연구개발기관명n	비고
3. 연구수당계상기준금액 ₅				
4. (직접비) 인건비 중 연구근접지원인력인건비				(비영리법인인 경우만 해당)
5. (간접비) 인력지원비 중 연구지원인력인건비				(비영리법인인 경우만 해당)

5) 대학, 기업 등 참여연구자가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와 별도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개발기관에 한해 참여연구자들의 연구수당을 계상하기 위한 기준금액으로, 해당금액(미지급인건비)은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동안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같은 기간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가 실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정도로 공급 금액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을 기재

2) 단계별 사용계획

(단위: 천원)

비목	1단계		n단계		n단계		합계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1. 직접비								
1.1 인건비								
1.2.1 학생인건비(일반) ₁₎								
1.2.2 학생인건비(특례) ₂₎								
1.3.1 연구시설·장비비(일반) ₃₎								
1.3.2 연구시설·장비비(특례) ₄₎								
1.4 연구재료비								
1.5 위탁연구개발비								
1.6 연구활동비								
1.7 연구수당								
2. 간접비								
2.1 인력지원비								
2.2 연구지원비								
2.3 성과활용지원비								
합계								

-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장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학생인건비를 기재(삭제하지 말 것)
-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장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학생인건비를 기재(삭제하지 말 것)
- 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장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연구시설·장비비를 기재(삭제하지 말 것)
- 4)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장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연구시설·장비비를 기재(삭제하지 말 것)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기재	1단계	n단계	n단계	비고
3. 연구수당계상기준금액 ₅₎				
4. (직접비) 인건비 중 연구근접지원인력인건비				(비영리법인인 경우만 해당)
5. (간접비) 인력지원비 중 연구지원인력인건비				(비영리법인인 경우만 해당)

5) 대학, 기업 등 참여연구자가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와 별도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개발기관에 한해 참여연구자들의 연구수당을 계상하기 위한 기준금액으로, 해당금액(미지급인건비)은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동안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같은 기간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가 실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정도로 곱한 금액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을 기재

3) 연구개발기관별-단계별 사용계획

가) 주관연구개발기관명:

(단위: 천원)

비목	1단계		n단계		n단계		합계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1. 직접비								
1.1 인건비								
1.2.1 학생인건비(일반) _{1J}								
1.2.2 학생인건비(특례) _{2J}								
1.3.1 연구시설·장비비(일반) _{3J}								
1.3.2 연구시설·장비비(특례) _{4J}								
1.4 연구재료비								
1.5 위탁연구개발비								
1.6 연구활동비								
1.7 연구수당								
2. 간접비								
2.1 인력지원비								
2.2 연구지원비								
2.3 성과활용지원비								
합계								

- 1J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장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학생인건비를 기재(삭제하지 말 것)
- 2J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장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학생인건비를 기재(삭제하지 말 것)
- 3J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장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연구시설·장비비를 기재(삭제하지 말 것)
- 4J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장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연구시설·장비비를 기재(삭제하지 말 것)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기재	1단계	n단계	n단계	비고
3. 연구수당계상기준금액 _{5J}				
4. (직접비) 인건비 중 연구근접지원인력인건비				(비영리법인인 경우만 해당)
5. (간접비) 인력지원비 중 연구지원인력인건비				(비영리법인인 경우만 해당)

5J 대학, 기업 등 참여연구자가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와 별도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개발기관에 한해 참여연구자들의 연구수당을 계상하기 위한 기준금액으로, 해당금액(미지급인건비)은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동안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같은 기간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가 실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정도로 곱한 금액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을 기재

나) 공동연구개발기관명: 000 (해당시 작성)

(단위: 천원)

비목	1단계		n단계		n단계		합계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1. 직접비								
1.1 인건비								
1.2.1 학생인건비(일반) ₁₎								
1.2.2 학생인건비(특례) ₂₎								
1.3.1 연구시설·장비비(일반) ₃₎								
1.3.2 연구시설·장비비(특례) ₄₎								
1.4 연구재료비								
1.5 위탁연구개발비	해당없음							
1.6 연구활동비								
1.7 연구수당								
2. 간접비								
2.1 인력지원비								
2.2 연구지원비								
2.3 성과활용지원비								
합계								

-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장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학생인건비를 기재(삭제하지 말 것)
-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장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학생인건비를 기재(삭제하지 말 것)
- 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장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연구시설·장비비를 기재(삭제하지 말 것)
- 4)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장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연구시설·장비비를 기재(삭제하지 말 것)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기재	1단계	n단계	n단계	비고
3. 연구수당계상기준금액 ₅₎				
4. (직접비) 인건비 중 연구근접지원인력인건비				(비영리법인인 경우만 해당)
5. (간접비) 인력지원비 중 연구지원인력인건비				(비영리법인인 경우만 해당)

5) 대학, 기업 등 참여연구자가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와 별도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개발기관에 한해 참여연구자들의 연구수당을 계상하기 위한 기준금액으로, 해당금액(미지급인건비)은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동안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같은 기간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가 실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정도로 곱한 금액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을 기재

다) 위탁연구개발기관명: 000 (해당시 작성)

(단위: 천원)

비목	1단계		n단계		n단계		합계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1. 직접비								
1.1 인건비								
1.2.1 학생인건비(일반) ₁								
1.2.2 학생인건비(특례) ₂								
1.3.1 연구시설·장비비(일반) ₃								
1.3.2 연구시설·장비비(특례) ₄								
1.4 연구재료비								
1.5 위탁연구개발비	해당없음							
1.6 연구활동비								
1.7 연구수당								
2. 간접비								
2.1 인력지원비								
2.2 연구지원비								
2.3 성과활용지원비								
합계								

-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장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학생인건비를 기재(삭제하지 말 것)
-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장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학생인건비를 기재(삭제하지 말 것)
- 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장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연구시설·장비비를 기재(삭제하지 말 것)
- 4)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장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연구시설·장비비를 기재(삭제하지 말 것)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기재	1단계	n단계	n단계	비고
3. 연구수당계상기준금액 ₅				
4. (직접비) 인건비 중 연구근접지원인력인건비				(비영리법인인 경우만 해당)
5. (간접비) 인력지원비 중 연구지원인력인건비				(비영리법인인 경우만 해당)

5) 대학, 기업 등 참여연구자가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와 별도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개발기관에 한해 참여연구자들의 연구수당을 계상하기 위한 기준금액으로, 해당금액(미지급인건비)은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동안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같은 기간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가 실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정도로 곱한 금액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을 기재

다. 연구시설·장비 구축·운영계획(해당 시 필수 작성)

1)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시설·장비명	현금/현물 구분	구축방식 ¹⁾	규격	수량	구축비용	구축기간	설치장소

1) 개발, 구매, 임대, 용역 등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

2) 연구시설·장비 운영·활용계획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시설명	기존/신 규 구분	운영기간	비용			전담 인력 수	활용계획	설치장소
				연간운영 비용	과제반영 비용	현금/현물 구분 ²⁾			
			yy-yy						
			yy-yy						

2) 협약기간 내 운영·활용하는 연구시설·장비에 소요되는 현금 또는 현물을 기재

8 연구개발 안전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

8-1. 안전조치 이행계획

구 분	주관연구개발기관명	공동연구개발기관명n	위탁연구개발기관명
안전책임자	책임자명	책임자명	책임자명
	소속/직위	소속/직위	소속/직위
안전교육 실시계획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및 조치계획			
사고발생 시 대처방안 및 행동요령			

8-2. 보안조치 이행계획

가. 보안과제의 분류 및 결정 사유

보안과제 분류	보안	일반
결정 사유		

나. 보안조치 사항

-
-

<별지 3> 연구개발사업 협약서 서식

■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 사업관리 지침[별지 제3호 서식] <제16조제3항 관련>

(10쪽 중 1쪽)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협약서

- 중앙행정기관명 : 문화체육관광부
- 전문기관명 : 한국콘텐츠진흥원
- 사업명 :
- 과제명 : 과제명
- 공고번호 : 공고번호
- 연구개발과제번호 : 연구개발과제번호
- 전체 연구개발기간 : 2000년 00월 00일부터 2000년 00월 00일까지
- 연구개발비

(단위 : 원)

연구개발기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합계
		현금	현물	소계	
1단계 (2000.00.00~ 2000.00.00)					
2단계 (2000.00.00~ 2000.00.00)					
3단계 (2000.00.00~ 2000.00.00)					
합계					

- 협약 당사자
 - (전문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명
 -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명
 - (위탁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명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연구책임자명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전문기관’ 이라고 함)과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의 목적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계획,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의 권리·의무 등을 명확히 정함에 있다.

제2조(관리규정 등) 본 협약서에 사용하는 ‘관리규정’ 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의미하며 이 협약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관리규정 또는 관리규정 등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행정규칙과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근거가 되는 법령과 행정규칙(관계법령 등)을 준수해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2.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3. 전문기관이 정하는 관련 지침 및 기준 등

제3조(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과제 수행 계획은 붙임1의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른다.

제4조(중앙행정기관의 권한과 의무) 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과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관한 종합적인 지원
2.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급
3.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에 대한 점검, 정산
4.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단계평가, 특별평가, 최종평가 등 평가관리 및 후속조치
5.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의 요구
6. 연구개발과제 성과의 활용에 대한 관리 및 감독
7. 연구개발과제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대한 관리
8. 연구개발정보의 수집, 관리 및 처리
9.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 및 조치
10. 연구개발 지원체계, 확립 및 평가, 연구개발 관련 교육·훈련
11.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제도개선의 권고 및 감독
12.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등 연구개발과제의 성실수행을 위한 조치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부수적인 업무, 기타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

제5조(전문기관의 권한과 의무) 전문기관은 별첨1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 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 대행 협약서”에 따라 제4조에서 정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권한과 의무를 대행한다.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권리와 의무)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2. 연구개발과제 수행 총괄 및 다른 참여 연구개발기관과의 협력
3. 연구개발계획서의 사전 검토·조정 및 작성 총괄
4.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연구개발비의 부담
5. 연구개발비의 사용·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총괄

6.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자, 시설의 확보 및 연구지원
 7. 연구개발과제의 단계보고서·최종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작성 총괄
 8.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보고서 등 작성 총괄
 9. 기술료의 징수·사용,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 납부 및 징수 실적의 보고
 10.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1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12. 연구윤리규정 마련 및 운영
 13. 연구시설·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
 14. 부정행위 등 발생 시 중앙행정기관에 보고
 15. 연구노트의 작성·관리에 관한 자체지침 마련 및 관리
 16. 그 밖에 법 또는 영에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정한 사항
-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관되어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들을 총괄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관되어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들의 총괄관리
 2. 연관되어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들의 연구개발계획서 사전 검토·조정 및 전체 연구계획 수립
- ③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및 수행에 대한 관리
 2. 연구개발과제에 공동 참여 및 다른 참여 연구개발기관과의 협력
 3.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
 4. 공동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연구개발비의 부담
 5.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자, 시설의 확보 및 연구지원
 6. 연구개발비의 사용·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7. 연구개발과제의 단계보고서·최종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작성
 8.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보고서 등 작성
 9. 기술료의 징수·사용,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 납부 및 징수 실적의 보고
 10.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협조
 1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12. 연구윤리규정 마련 및 운영
 13. 연구시설·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
 14. 부정행위 등 발생 시 중앙행정기관에 보고
 15. 연구노트의 작성·관리에 관한 자체지침 마련 및 관리
 16. 그 밖에 법 또는 영에서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정한 사항

④ 위탁연구개발기관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및 수행에 대한 관리
2. 연구개발과제에 공동 참여 및 다른 참여 연구개발기관과의 협력
3.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
4.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자, 시설의 확보 및 연구지원
5. 연구개발비의 사용·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6. 연구개발과제의 단계보고서·최종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작성
7. 기술료의 징수·사용,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 납부 및 징수 실적의 보고
8.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협조
9.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10. 연구윤리규정 마련 및 운영
11. 연구시설·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
12. 부정행위 등 발생 시 중앙행정기관에 보고
13. 연구노트의 작성·관리에 관한 자체지침 마련 및 관리
14. 그 밖에 법 또는 영에서 위탁연구개발기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정한 사항

제7조(연구자의 권리와 의무) ① 연구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2.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제8조(협약의 변경) ① 이 협약의 변경에 관하여는 관리규정에 따른다.

- ② 협약변경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절차 등은 관리규정 및 과제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연구개발계획 등 변경을 전문기관이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9조(협약의 해약) 이 협약의 해약에 관하여는 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0조(연구개발결과 보고) 연구개발기관은 진도보고서,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성과 활용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의 서식 및 제출기한은 관리규정 및 과제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①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에 관하여는 관리규정에 따른다.

- ②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평가기준·방법·절차 등을 정하여 단계평가, 최종평가,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필요시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평가에 따른 조치) 단계평가, 최종평가, 특별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는 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3조(연구개발비 부담·지급·사용·관리 및 사용내역 보고·정산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지급받은 정부출연연구개발비 중 본 과제의 수행을 위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해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부담하기로 한 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급 횟수, 시기, 지급 조건·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1. 연구개발비의 절감 또는 연구개발기간 단축 등에 따라 협약이 변경되는 경우
- 2. 정부의 예산 사정, 관련 법령 또는 규정의 개정이나 정부의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3. 본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는 경우
- 4.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의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 5. 기타 전문기관의 장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24조에 따른 연구개발비카드(이하 “연구개발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거나 지정해야 한다.

- 1. 통합정보시스템 도입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연결된 연구개발비카드를 신청하여 발급
- 2. 결제계좌가 연구개발기관의 법인계좌인 법인카드를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해당 법인카드를 연구개발비카드로 지정

⑤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를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하였음을 발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발견시점이 연구개발과제 협약기간 중인 경우에는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한 금액을 감액 또는 회수
- 2. 발견시점이 연구개발과제 협약기간 종료 후, 정산 전인 경우에는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한 금액을 정산 시 불인정하여 회수
- 3. 발견시점이 정산 후인 경우에는 재정산을 실시하여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한 금액을 불인정하여 회수

⑥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과학 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을 적어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연구개발비 부담·지급·사용·관리 및 사용내역 보고·정산 등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및 관리)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2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른다.

제15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공개) ①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홍보, 공개 또는 발표 등을 할 경우에 다음 각 호에 따른 필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연구개발성과가 논문인 경우: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 연도,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명, 전문기관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과제별 기여율(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 각 기여율의 합은 100퍼센트가 되도록 하며 아래 예시를 참조한다.)

- 한글 : “본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으로 수행되었음(과제명 : 000, 과제번호 : RXXXXXXXXX, 기여율: 00%)”

- 영어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Culture, Sports and Tourism R&D Program through the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grant fund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 20XX(Project Name: 000, Project Number: RXXXXXXXXX, Contribution Rate: 00%)”

2. 연구개발성과가 특허인 경우: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명, 국가연구개발사업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과제별 기여율(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 각 기여율의 합은 100퍼센트가 되도록 한다),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3. 연구개발성과를 언론에 홍보하는 경우: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 연도 및 금액,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명, 전문기관명, 국가연구개발사업명

②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발표, 홍보의 시기,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에 공익적인 차원에서 국내외 성과전시회 및 컨퍼런스 등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 ③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해 전문기관의 장은 추적조사를 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연도부터 5년 동안 매년 2월 말일까지 성과 활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추적조사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시 유·불리한 대우를 할 수 있다.
- ⑤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이 연구개발성과를 개량하여 새로운 성과(이하 “개량성과“라 한다)를 창출하거나 지식재산권 등을 취득하였을 경우에 개량성과의 실시에 관한 계약은 연구개발성과의 실시에 관한 계약으로 본다.
- ⑥ 연구개발기관은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후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와 등록·기탁한 연구개발성과 목록을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다만, 비공개 특허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⑦ 그밖에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공개·촉진에 관하여는 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6조(권리·의무 승계의 제한)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본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여 또는 승계할 수 없다.

제17조(기술료 등의 징수·납부·사용) ① 기술료의 징수·감면·사용, 기술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감면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하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연구개발성과 활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실시를 허락하는 경우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 ③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관리규정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④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와 관련하여 기술기여도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 기술 기여도 = (소숫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frac{\text{정부지원 연구개발비*}}{\text{총사업비**}}$
-----------------------------------	--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국가연구개발사업 해당과제의 총 사업비 중 정부 지원분

** 총사업비 : 국가연구개발사업 해당과제의 Σ(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민간현금 + 민간현물)

※ 기술기여도는 원칙적으로 위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산정하되, 매출액 산정기준에 따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표의 기술기여도는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기관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18조(기한의 이익 상실) 연구개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으로부터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전문기관에 대한 모든 채무(지원금 환수액 등)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변제 또는 이행할 의무를 진다.

1. 파산신청 또는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경우
2. 부도·폐업·소재불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9조(연구시설·장비의 등록·관리) 연구시설·장비의 등록·관리에 관하여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와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연구개발정보의 처리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는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의 연구개발 현장 확인, 관계 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이 협약에 따른 어느 하나의 당사자는 관련 자료를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할 때 이 협약에 따른 다른 당사자의 주소로 내용증명, 등기우편 또는 전자문서 등 서면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연구개발기관이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전자메일 주소를 통한 전송
2.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 발송
3. 협약 당사자의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 발송

③ 이 협약에 따른 어느 하나의 당사자는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 즉시 나머지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④ 연구개발기관이 본 과제외의 연구개발성과 및 연구자 등의 정보를 전문기관에 제공한 경우 해당 정보의 수집·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그 밖에 연구개발정보의 처리 등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9조·제20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2조·제43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9조·제20조 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2조·제43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연구실 등의 안전관리) ①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관련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실 안전 관련 사항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이 공공기관인 경우에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보안관리)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이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보안담당자를 지정하고 보안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안관리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4조부터 제48조에 따른다.

제23조(연구지원체계 확립 등) 연구지원체계의 확립 및 소속 연구자·연구지원인력의 역량 강화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1조·제52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1조·제52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등) 부정행위 등의 제재처분과 연구개발비 환수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6조·제57조,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연구개발기관의 부정행위의 검증·조치·보고에 관한 자체규정에 따른다.

제25(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해석에 의한다.

<별지 4> 연구개발과제 변경 및 중단요청서 서식

■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 사업관리 지침[별지 제4호 서식] <제17조제1항 관련>

(4쪽 중 1쪽)

연구개발과제 변경 및 중단 요청서

사업명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XXXXXXXXXXXXXXX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명							
위탁연구개발기관명							
연구 개발 기간	전체						
	해당 단계						
신청인		주관연구책임 자기준 작성필요	소속			전자우편	
			전화번호			우편주소 (직장 또는 자택)	
요청 사항		연구개발과제 변경		승인사항 []			연구개발과제 중단 []
요청 사유							
연구개발과제 변경 (중단 요청의 경우 작성하지 않음)	구분	[] 연구개발 목표 변경	[] 연구개발기간 변경	[] 연구개발기관 변경	[] 연구책임자 변경		
		[] 연구개발비 변경	[] 기업정보 변경	[] 참여연구자 변경	[] 기타사항		
	주요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위와 같이 연구개발과제 변경 또는 중단을 요청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주관연구책임자기준 작성필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협약변경 상세내용 비교표

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변경 신청일	YYYY.MM.DD		

변경 전	변경 후

(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 동의서

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전체 연구개발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p>본 과제의 연구개발계획변경(연구개발목표/연구개발기간/연구개발기관)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합니다.</p> <p>※ 주요 변경내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변경 전</th>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변경 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height: 80px;"></td> <td></td> </tr> </tbody> </table>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20					
연구개발기관장: (직인) 연구책임자: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주관/공동) 기관 포기 및 권리의무 승계약서

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전체 연구개발기간	년	월	일 (개월)																		
<p>(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인 (포기기관명)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시행하는 상기 연구개발과제에 (○○○○○○)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참여를 포기하며, 이에 따른 제반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p> <p>또한 (인수기관명)은 기존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인 (포기기관명)으로부터 제반 권리와 의무를 승계 받고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관련규정 및 지침에 의거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임을 확약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p>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width: 30%; text-align: center;">주관연구개발기관</td> <td style="width: 40%;">연구개발기관장:</td> <td style="width: 30%; text-align: right;">(직인)</td> </tr> <tr> <td></td> <td>연구책임자:</td> <td style="text-align: right;">(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포기 및 인계기관</td> <td>연구개발기관장:</td> <td style="text-align: right;">(직인)</td> </tr> <tr> <td></td> <td>연구책임자:</td> <td style="text-align: right;">(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인수기관</td> <td>연구개발기관장:</td> <td style="text-align: right;">(직인)</td> </tr> <tr> <td></td> <td>연구책임자:</td> <td style="text-align: right;">(인)</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margin-top: 20px;">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p>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장:	(직인)		연구책임자:	(인)	포기 및 인계기관	연구개발기관장:	(직인)		연구책임자:	(인)	인수기관	연구개발기관장:	(직인)		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장:	(직인)																			
	연구책임자:	(인)																			
포기 및 인계기관	연구개발기관장:	(직인)																			
	연구책임자:	(인)																			
인수기관	연구개발기관장:	(직인)																			
	연구책임자:	(인)																			

<별지 5> 이의신청서 서식

■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사업관리 지침 [별지 제5호 서식] <제28조제3항 관련>

(1쪽 중 1쪽)

이의신청서

구분	[] 선정평가		[] 특별평가	
	[] 단계평가		[] 최종평가	
사업명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연구책임자	
연구 개발 기간	전체		평가결과 통지일	
	해당 단계 (해당 시 작성)			
신청인	성명 또는 연구개발기관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속 (해당 시 작성)		우편주소 (직장 또는 자택)	
신청 대상 및 내용				
신청 요지 및 이유				

위와 같이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상기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1. 통지된 평가결과서 1부.
2. 이의신청 공문 1부.

신 청 인 : 년 월 일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